

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 
(손인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. 8.

대표발의자 : 손인춘 · 서병수 · 이상일  
이인제 · 박창식 · 송영근  
김성찬 · 유승민 · 김형태  
김종태 · 유정복 · 유기준  
한기호 · 신의진 · 김태흠  
李宰榮 · 이에리사 의원  
(17인)

제안이유

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.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.

한편,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

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.

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·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

- 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·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바.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·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- 사.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조사·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·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,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하도록 함(안 제21조).
- 자.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함(안 제22조).

##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터넷게임”이란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.
2. “인터넷게임중독”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.
3. “인터넷게임중독자”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터넷게임에 정신적·

신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.
5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배우자 등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친권이 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6. “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”란 청소년인 인터넷게임중독자를 말한다.
7. “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

나.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(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)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##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

제4조(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) 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(이

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1. 예방·치유를 위한 상담·교육·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조사·연구·분석 및 평가
3. 예방·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
4.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
5.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·재활 사업 지원
6. 예방·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
7. 그 밖에 예방·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

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,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⑤ 국가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.

⑥ 센터는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⑦ 센터가 아닌 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사업계획서의 제출 등) ①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(센터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
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(任免)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감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「민법」의 준용) 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요청) ①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제1항의 치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2항의 인터넷게임중독자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가 전부 부담한다.

④ 그 밖에 제1항의 센터에 대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요청 및 제2항의 센터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한 기준·절차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재정적 조치

제10조(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의 설치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·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제12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
2. 「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3. 정부의 출연금



4. 개인이나 법인·단체의 출연금

5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센터의 운영

2. 「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의 개발에 관한 연구

3.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(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담금 부과 비율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수익성,

「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납부의 고지)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(전자통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의신청) ①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납부 독촉)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가산금의 부과·징수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독촉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17조(강제징수)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

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8조(부담금 등의 귀속) 제12조의 부담금 및 제16조의 가산금은 기  
금에 귀속된다.

제19조(부담금 부과·징수의 협조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  
과·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그  
밖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 
있다.

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  
계 기관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  
하여는 사용료·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#### 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조치

제20조(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조사·상담 등)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 
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·상담 등을 수  
행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
2.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
3.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및 재발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  
도

4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·조사 등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조사

5.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·상담 등의 업무를 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조사·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(취학상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·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수업연한의 단축,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조치

2. 해당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

3. 그 밖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

치

② 제1항의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전담교사의 배치 등)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(이하 “전담교사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전담교사는 학교의 장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교사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전담교사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을 거쳐 센터(지역센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교사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5장 벌칙

제23조(과태료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) ①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설립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(連名)으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인터넷게임중독치

유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.

#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(1)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음 (안 제4조).
- (2)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- (3) 교육감의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담 및 조사 등을 규정함(안 제20조).
- (4)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둠(안 제22조).

### 2. 추계의 전제

(1) 안 제4조는 인터넷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는 11개의 인터넷 중독대응센터를 지정하고 “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지원 사업((2013년 예산안 31억 2,500만원)”을 시행하고 있다([참고표 1] 참고). 이 센터는 인터넷중독 상담 예방교육, 학교파견 집단 상담, 지역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특성화 사업 및 치료병원 연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, 법안에서 제시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, 본 조항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

(2) 안 제10조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 재원으로 1)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 부담금 및 가산금, 2) 「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, 3) 정부의 출연금, 4) 개인이나 법인·단체의 출연금, 5) 기금 운용 수익금, 6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.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정안이 제시한 재원별로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하게 될지 알기 어렵다. 이를테면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 기준, 대상과 범위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, 수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재정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. 기타 정부 출연금이나 개인과 법인 등의 출연금 등 다른 재원 역시 현 시점에서 추산하기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.

(3) 안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상담 및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육청 산하 Wee센터를 통해 게임과 몰입 예방 상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(6억 3,000만원)과 학교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과 몰입, 위기관리 및 개입프로그램 설명회 사업(7,000만원) 등을 지원하고 있다.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인력 양성 사업(9,000만원) 및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(190개소)를 통하여 치료 협력병원과 정신보건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(2억 3,800만원). 따라서 동 조문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이 시행중이며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.

(4) 안 제22조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상담 등을 책임질 전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. 본 추계에서는 학생 101명 이상의 초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 1인을 두는 것으로 추계한다. 학생수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순회 전문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, 본 추계에서도 현 제도를

준용하여 추정한다. 다만,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정안과 관계없이 매년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해왔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자연증가분 즉 현행 사업에 의한 기준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은 차감한 후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한다.

(5) 제정안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이며,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.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.

(6)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.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제정안에 의해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경우, 2014년 31억 8,1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04억 2,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14 ~ 2018년

(단위: 명, 억원)

	2014	2015	2016	2017	2018	합계
총원 예정 교사 수 (누적치, 가)	80	160	241	321	385	-
인건비 단가 (추정, 나)	0.4	0.4	0.4	0.4	0.4	-
전문상담교사 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(가 × 나)	32	65	100	137	169	504

### 4. 부대의견

없음.

5.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

과 장 박 선 춘

예산분석관 문 지 은(788-4741, happyplanet@nabo.go.kr)

## 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### 1. 전문상담교사의 배치

제정안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할 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.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수 101명 이상<sup>1)</sup>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, 101명 이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수는 국·공립 초·중·고등학교는 총 7,271개교, 사립학교 1,571개교. 특수학교의 경우 64개소 등 총 7,335개교이다. ([표 2] 참고).

[표 2] 국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전문상담교사 정원

(단위: 개소, 명)

학교유형	학교 수				연도별 전문상담교사 정원				추가 필요인원 (a-b)
	국립	공립	사립	소계(a)	국립	공립	사립	소계(b)	
초중고 <sup>1)</sup> 일반학교	45	7,226	1,571	7,271	-	903	211	1,114	7,060
초중고 특수학교	5	60	91	64	-	-	-	-	64
소계	50	7,286	1,662	7,335	0	903	211	1,114	7,124

주: 1) 일반학교의 경우, 학생수 101명 이하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함, 학생수 100명 이하(3학급)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공동관리 계획을 수립,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제외함. 특수학교는 전체 국공립 특수학교수임  
자료: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및 교육과학기술부(2011), 「특수교육실태조사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

이들 학교에는 2007년부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여, 2012년까지 총 3,008명<sup>2)</sup>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. 따라서 제정안과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전문상담교사는 매년 배치될 것으로 판단된다. 본 추계에서는 이러한 현정책에 따른 증가분(기준선)은 차감한 후에도 총

1) 100명 이하(3학급)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공동관리 계획을 수립,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제외함

2) 2012년 9월 임용 기준임

원되지 못한 나머지 인력규모를 추가재정소요로 판단한다.

[표 3]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: 2007~2012년

(단위: 명)

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합 계
국공립 전문상담교사 수	175	299	403	403	403	903	2,586
사립 전문상담교사 수	172	-	-	-	39	211	422
합 계	347	299	403	403	442	1,114	3,008

주: 1. 2005년부터 순회 전문상담교사가 교육청에 배치되어, 상담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, 이는 별도정원이므로 제외함  
자료: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2012년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한 학교수는 7,335개교이다.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이후부터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하여 온 추세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 38.8%을 보이며, 사립학교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4.2%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. 이러한 자연증가분(기준선)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[표 3]과 같이 2018년까지 6,739명의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판단된다. 이 규모는 제정안과 상관없이 배치되는 것이므로, 이를 차감하면 321명<sup>3)</sup>을 추가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. 본 추계에서는 이 321명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판단하도록 한다.<sup>4)</sup>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바 없으므로,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64개교에서 근무할 64명의 전문상담교사이다.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제정안에 의해 추가로 필요한 전문상담교사는 총 384명

3) 학교 유형별로 각각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[표 4]와 같이 초중등학교에는 2018년까지 총 6,739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. 하지만 제정안에 의해 전문상담교사가 전체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므로, 이러한 자연증가분(6,739명)을 제외할 경우 총 32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.

4)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상담교사의 졸업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800명(2013년 1,000명) 규모의 전문상담교사를 증가시켜야 2020년까지 6,868명을 배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, “전문상담교사 중장기 수급계획”을 수립하였다(참고자료 1, 참조). 하지만 동 계획에 따라 향후 실제 충원규모는 현시점에서 알 수 없으므로, 추계기간(5년)동안 필요인력이 모두 충원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.

(일반학교 321명 + 특수학교 64명)이며, 추계기간동안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(특수학교의 경우 64명은 추계기간 초기 4년도에 배치하도록 가정함).

[표 4] 전문상담교사 연간 필요인력: 2014~2018년

(단위: 명)

		2014	2015	2016	2017	2018	합계	
일반학교 전문상담교사 현행 유지시 총원예상규모 <sup>1)</sup> (가) (기준선)	누적치	1,970	2,656	3,604	4,918	6,739	-	
	순증분	496	686	949	1,314	1,821	3,804	
제정안 에따른 전문상담교사 필요인력 (나)	일반학교 (국공립 사립포함)	누적치	64	128	193	257	321	-
		순증분	64	64	64	64	64	321
	특수학교	누적치	16	32	48	64	64	-
		순증분	16	16	16	16	-	64

주: 1) 2005년 이후 전문상담교사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, 매년 증가되는 인력예상규모(국공립 및 사립을 각각 계산한 합계임)

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인건비는 10개월 기준 3,131만 5,000원(10호봉 기준)<sup>5)</sup>이며,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배치될 경우 다음과 같이 소요예산을 추산할 수 있다. 전문상담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위프로젝트의 위클래스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.

5) 3월 채용후 12월까지 근무할 경우의 봉급이며, 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비 등을 포함한 금액. 향후 5년간은 연봉(12개월)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,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근무자 모두 단가는 동일함

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제정안에 의해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경우, 2014년 31억 8,1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04억 2,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14~201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14	2015	2016	2017	2018	합계
총원 예정 교사 수 (누적치, 가)	80	160	241	321	385	-
인건비 단가 (추정, 나)	40	41	42	43	44	
전문상담교사 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(가 × 나)	3,181	6,534	10,046	13,729	16,938	50,428

### III. 참고자료

[참고표 1]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현황

	장소	상담사 (명)	면적 (㎡)	주요구성(개)				비고
				대기실	개인 상담실	집단 상담실	설치연도	
서울	한국정보화진흥원	9	300	3	4	2	'02.03.01	지자체 청사외 별도 공간 활용
부산	정보산업진흥원	3	357	1	2	2	'08.12.22	
경기	여성능력개발센터(용인)	3	495	1	2	2	'11.07.13	
	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(의정부)	3	168	1	2	1	'12.02.15	
전북	정보산업지원센터(전주)	3	495	1	2	1	'08.12.12	
충북	충북지식산업진흥원(청원군 오창)	3	108	1	1	1	'12.11.2	
대전	대전광역시청	3	66	1	1	1	'05. 7.15	지자체 청사내 공간 활용
대구	대구시청(별관)	3	60	-	1	-	'05.10.19	
광주	광주광역시청	3	40	-	1	-	'05.11. 4	
강원	강원도청(춘천)	3	82	1	1	1	'05.11. 4	
제주	정부제주지방청사	3	132	1	1	1	'05.12.13	

자료: 행정안전부(2012.11)

[참고표 2]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주요업무

	주요내용
인터넷중독 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인 대면상담(내방객), 전화상담(아름누리 상담콜, 1599-0075), 온라인 상담(www.iapc.or.kr)</li> <li>· 예방교육 및 학교 파견 집단상담,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</li> <li>·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상설 프로그램(놀이치료, 예술치료 등) 운영</li> </ul>
지역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교육청, 관내학교, 군부대, 어린이집 등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수요 발굴</li> <li>· 지역 위촉상담사, 가정방문상담사 및 특강강사 배정 및 실적 관리</li> <li>· 상담협력기관 모집·지역 네트워크 구축</li> </ul>
지역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터넷중독 예방 캠페인 및 지역 행사 추진</li> <li>· 지역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특성화 사업 및 치료병원 연계 추진</li> </ul>

자료: 행정안전부(2012.11)